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021호, 2011. 07. 05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7가지 형태의 근해어업에 대해서만 어선의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멸치포획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어업과 관련하여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4시 30분까지 어구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현재 경사로를 활용하여 야간 조업을 수행하는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에 의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 및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어선법 일부개정

▣ 법률 제10847호, 2011. 07. 14

-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선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하여 어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

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7호, 2011. 07. 22

- 구명설비 시험 시 탑승인의 평균체중을 변경함 (75킬로그램에서 82.5킬로그램)
- 조난설비 국제기준과 동등한 시험갯수로 변경함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대상을 확대함
 - 내연기관의 범위를 확대(50마력 미만 → 600마력 미만)하고 시험기준 신설
 -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용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 선박용 난연재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4. 수산업법 일부개정

▣ 법률 제10943호, 2011. 07. 25

-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제10947호, 2011. 07. 25

-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어업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 및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게 고지하고, 어업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거나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며,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되,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

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용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어구에 대하여 감정 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업 선진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 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 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선원법 전부개정

▣ 법률 제11024호, 2011. 08. 04

-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
 -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 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 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주변을 향해 중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의료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무료로 의료조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선원구직·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 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
- ## 7.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1호, 2011. 09. 05
- 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에서도 건망어업 등 일부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여 균형있는 어업 발전을 도모함

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158호, 2011. 09. 22

-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 시 안전관리의 강화,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의 개선 및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0803호, 2011. 6.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및 해역 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면제대상 구제화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함
-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조정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1.5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연료유 중 병커시유의 황함유량을 4.5퍼센트 이하에서 3.5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 지역방제대책본부의 방제대책본부로의 통합
 - 중앙과 지역의 방제대책본부가 분리되어 운영

됨으로써 방제수습 체계상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지역방제대책본부를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방제대책본부가 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 마련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에 따라 포상금액을 300만원 이내에서 다르게 정함
- 해양시설 관리체계 개선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의 해양시설 관리업무를 해당 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
-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조정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를 일반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그 양이 20만㎥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9.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제23190호, 2011. 09. 30

- 21세기 세계경제가 융합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함에 따라 융합 신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

융합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이 산업융합에 관련된 애로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산업융합 신제품이 개별 법령의 기준·규격·요건 미비 등으로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 까지 연도별 실행계획을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정·보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행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구성하고, 산업융합발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함

- 산업융합촉진 ombudsman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협조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협의를 구성하여 적합성 인증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하고,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을 한 제품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적합성 인증기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적합성 인증절차 및 방법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줄 개연성이 큰 것을 인정되는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으로 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 등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을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06호, 2011. 10. 06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 분뇨·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육상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배출업 변경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1.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 지식경제부령 제206호, 2011. 10. 06

-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2.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233호, 2011. 10. 19

- 외항 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면허·등록 및 감독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92호, 2011. 10. 19

-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100톤 이상의 선박보유에서 20톤 이상(부선 100톤 이상)의 선박보유로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해운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233호, 2011. 10. 19. 공포·시행)으로 외항 여객운송사업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14.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46호, 2011. 10. 19

- 국제해사기구(IMO)등 국제기구의 권고 반영 및 해상 안전통신 제고를 위한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사항 수용
 -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를 특정 무선설비가 장시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난, 해적피습 등 해상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대(VHF)무선설비의 송신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기술적 조건 규정
- 1.8/2.1GHz대역의 LTE 장비 및 2.5GHz대역에서 휴대인터넷용 장비를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및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 개정
 - 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하여 이용률이 높은 타 업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간이무선 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 개정
 - 1745~1785MHz, 1920~1940MHz, 1840~1880MHz, 2110~2130MHz대역에서 이동통신용 대역에 LTE용장비를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개정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2575~2615MHz대역에서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를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
-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주파수 공용방식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를 주파수가 부족한 지정방식 간이무선국 및 산업통신용 무선국용 주파수로 용도 변경

점을 개선·보완함

1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물부령 제224호, 2011. 12. 08
 -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내용이 「선박안전법」에서 「어선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선박을 어선과 선박으로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5.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40호, 2011. 12. 01
 - 카페리선박(평수구역 또는 항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카페리선박)의 개방된 차량구역내 격벽 및 갑판에 대한 방열조치를 완화함

1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10호, 2011. 12. 13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선박 보유량, 자본금, 시설 및 경영형태 등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등록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357호, 2011. 12. 08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802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징계의 집행유예제도 및 약식심판제도 등이 도입되고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징계 집행유예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사고의 기준을 정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 중 조사대상자의 진술이나 사생활 정보 등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1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15호, 2011. 12. 14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도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으나 해당 조종면허 소지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인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려는 것임

20.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91호, 2011. 12. 15

- 국제구명설비코드 개정 사항 반영함
 - 구명설비에 적용하는 1인당 중량을 75킬로그램에서 82.5킬로그램으로 변경 개정함
- 적용제외에 대한 조항 개정
 - 특수한 상황에서 기준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당 규정이 불분명하여 인정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21.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373호, 2011. 12. 16

-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0801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해사안전 관리계획제도, 해양시설 보호수역제도, 항행 장애물 제거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해사 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세부적인 수립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해상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항행장애물의 제거에 따른 비용 징수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체제 수립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음주운항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사안전 관리계획의 세부적인 수립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규정사항, 수립절차, 고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세부적인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을 규정함
 - 해사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및 시행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사안전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세부기준 마련
 - 해양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설정되는 해양시설 보호수역은 해양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정하되, 그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에 표시하도록 함
 -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보호수역의 입역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정부의 해양시설 보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항행장애물 표시·제거 비용 징수절차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책임자를 알 수 없는 항행장애물을 표시·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행장애물이나 그 선박을 공매하여 그 표시·제거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개선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종전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등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등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기준을 종전의 0.08퍼센트에서 0.05퍼센트로 강화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함

2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379호, 2011. 12. 16

- 일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전부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신설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0799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조종면허시험의 전부면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의 범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세부 업무 범위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등록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세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19호, 2011. 12. 23

-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 배출해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유조선 간 기름화물 이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선박 내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제도를 도입하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대상인 디젤기관의 범위와 그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제도 및 일부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유성찌꺼기(sludge)의 정의 추가
 -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는 폐유
 - 기름여과장치로부터 분리된 폐유
 -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으로 생기는 폐유
 - 폐유압유 및 폐윤활유 등 선박의 운항중에 발생하는 폐유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
-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을 정함
 -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의 경우 2021년 12월 31까지는 현행과 같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교체만 가능(동일한 교체 : 동일마력 및 동일모델 디젤기관으로의 교체
-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

24.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88호, 2011. 12. 28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건조검사를 대체하는 선체구조강도시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건조검사를 대체하여 시행하는 선체강도시험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새로이 사용

되는 용어를 정의함

- 대상선박을 현재 선박길이 15미터 미만 플레저 보트 및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모든 선박을 추가함(「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4)에 따른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강도계산서 적용 규정 수용)
- 판두께 측정이 어려운 샌드위치 구조 선박 및 강도 등이 우수한 복합재료 선박의 선체구조 강도 시험방법에 등분포하중에 의한 종굽힘 시험방법 기준을 추가하여 다양화 함

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24호, 2011. 12. 29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802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국선 심판 변론인제도 및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제도 등이 도입되고,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준해양사고의 유형을

정하고,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및 특별조사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6.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5호, 2011. 12. 30

- 국제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및 국제화재 안전장치(FSS)코드 2010년 개정사항을 수용함
- 제어장소, 업무구역, 기관구역 등에 설치되는 화재탐지장치의 전원 및 설치요건을 신설함
-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요건, 설치장소 및 기능요건을 신설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가연성가스검정기와 함께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추가 비치토록 함
- 연관식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탄화수소가스 탐지장치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신설함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개정 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애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등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실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